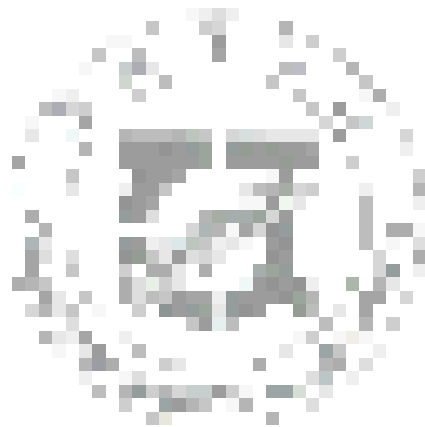


**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사업  
지식재산 학업장려금 지급지침**

---



**2026. 2. 20.**

**전남대학교 광주/전남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**

# 지식재산 학업장려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 (안)

## 제1조 목적

이 지침은 미래주도형 융복합 지식재산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식재산 교육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사업(이하 ‘지식재산 중점대학 사업’ 이라 한다.)의 지식재산 학업장려금 지급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지급대상

지식재산 학업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지식재산 중점대학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남대학교 학부 또는 대학원의 지식재산 학위과정에 재학중인 내국인 대학(원)생을 대상으로 한다.

## 제3조 선정기준

- ① 제2조 지급대상자 중 지식재산 학위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을 이수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장려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지식재산 학위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.
- ③ 학업장려금 지급대상 과목의 이수여부는 해당 학기의 수업일수 기준 3/4이상(15주 기준일 경우 12주차 이후)일 경우 인정한다.

## 제4조 지급금액

- ① 지식재산 학업장려금은 매학년도 예산금액과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한다.
- ② 학부 과정의 학업장려금 지급금액은 제3조 선정기준에 따라 지급금액을 결정하며, 1회 지급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상한으로 한다.

수강학점	지급액
6학점 이상	최대 1,000,000원
3학점	최대 500,000원

- ③ 대학원 과정의 학업장려금 지급금액은 제3조 선정기준에 따라 지급금액을 결정하며, 1회 지급시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상한으로 한다.

수강학점	지급액
6학점 이상	최대 1,500,000원
3학점	최대 750,000원

## 제5조 지급시기

지식재산 학업장려금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결정한 후 매학기말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## 제6조 지급제외

- ① 지식재산 학업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휴학하거나 또는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정해진 시점부터 학업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- ② 근신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다음 학기 학업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- ③ 지식재산 유관기관에 재직(휴직 포함)중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